

물품규격서(시방서)

2019. 05

1 물품규격서

가. 기준규격

- 아래 규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주택 수거함

구분	내용
형태	900 mm 900 mm 1,400 mm 소형가전제품 수거함 수거함 번호 시각장치(경첩, 자물쇠) 내부 기울임판 바퀴 (고정가능) 본체 정면도(외부) 측면도(외부) 후면도(외부)
규격	W : 900 X D : 900 X H : 1,400(mm)
재질	STEEL 및 도장
특징	· 고정 가능한 바퀴설치(이동식) : 고정을 위한 바퀴 고정장치 필수 · 빗물고임 방지 지붕식 · 지붕 개폐를 위한 유압기 설치 · 시각장치(경첩, 자물쇠) 부착 - 지역별 열쇠 하나로 자물쇠 공유 가능 - 자물쇠 크기 : 최소 30a 이상 - 자물쇠 재질 : 강철(외부 충격에 쉽게 부서지지 않아야 함) · 내부 마대연결고리 부착(6EA) · 수거함별 지정번호 부여 · 배출 대상 품목, 수거자 연락처 안내 · 분실, 도난 방지 경고 안내문

- 수거함 부착 안내스티커, 수거함번호 스티커

구분	내용		
안내스티커	(전면) 중소형폐가전제품 전 용 수 거 함 수거대상품목 컴퓨터 본체,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프린터, 음식물처리기, 전자레인지, 식기건조기(소형),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가습기, 전기다리미, 믹서기, 청소기, 전기주전자, 스캐너, 제습기, 빔프로젝트, 비디오플레이어, 휴대폰(본체,배터리,충전기), 디지털카메라, 스탠드조명, 휴대용안마기, 헤어드라이기, 전화기, 팩시밀리, 선풍기, 게임기(소형) 등 기타 소형제품 지자체 로고 OO광역시 OO구 공제조합 CI 수거신청 및 문의 ###-####-#### 고객의 소리 ###-#### (상단) 		
수거함 번호 (예시)	<table border="1"> <tr> <td>경기 김포</td> <td>KG 2019-01-001 [경기+년도+지자체+수거함번호]</td> </tr> </table>	경기 김포	KG 2019-01-001 [경기+년도+지자체+수거함번호]
경기 김포	KG 2019-01-001 [경기+년도+지자체+수거함번호]		
특징	· 물에 젖어도 손상(찢어지거나 떨어짐 등)되지 않아야 함 · 지자체 로고, 지자체명, 전화번호 안내는 각 지자체마다 다름 · 수거함별 특이성으로 인한 문구 변경 가능성 있음 · 태양광에 변색되지 않아야 함		

가. 물품의 제작·배송·설치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장비의 제작 및 배송 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거함 납품 시 생산 LOT별 검사를 시행하여 합격된 제품만을 납품해야 하며, 스티커는 수거함에 부착하여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해당되는 수거함을 배송·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시, 본 공제조합, 공제조합과 위탁계약 중인 재활용사업자(사업회원)와 사전 협조하여 설치를 진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세부 납품일자가 확정되면 '발주처'에 이를 통보하여 현장 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협조사항

- '발주처'의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가 필요한 경우 아래 업체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1) 금회 과업 사업자 (금회 과업 수행자)
 - 2)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회원

다. 제출서류

- 계약 후 1주일 이내 제출서류
 - 1) 작업계획서(수거함 제작·배송·설치 일정 및 세부작업 공정표 포함) 1부
 - 2) 설치 및 기술지원 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도 1부.
- 성과품 제출은 '발주처'의 요청 시, 자재수급현황, 제작완료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라. 기타

-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 내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동주택 수거함 설치·운영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 또는 지정하는 법원으로 한다.

- 이 상 -